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10 발의연월일: 2021. 6. 4.

발 의 자:전용기·강준현·고영인

김병주 · 박광온 · 설 훈

송갑석 · 이탄희 · 이형석

임호선 · 허 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웹툰 시장은 개별 플랫폼이 일 거래액 30억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유망 산업이며,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탄력을 확보한 상황임.

웹툰 산업의 성장에 비해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가 웹툰을 포섭할 수 없고 제작집단인 만화가의 정의가 미비하며, 협회 설립 등의 조치가 부족한 점 등 진흥법의 독립화에 비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짐.

이에 진흥법으로서 체계를 보완하고 웹툰을 법정 정의에 신설하며 만화·웹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웹툰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명을 '만화·웹툰의 진흥에 관한 법률'로 개정함(안 제명).
- 나. 웹툰에 관한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망에서 만화의 형식으로 제작·가공된 콘텐츠로 신설하고, 만화가 의 정의 또한 마련함(안 제2조).
- 다. 현재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법제화하여 진흥법의 체계를 보완함(안 제3조의3).
- 라. 만화가단체 및 만화사업자단체 설립을 규정함으로써 업계 내 자발적인 유통 질서 확립과 공동이익 추구의 기회를 마련함(안 제15조).

법률 제 호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만화진흥에 관한 법률"을 "만화·웹툰 진흥에 관한 법률"로 한다.

제1조 중 "만화 창작 및"을 "만화·웹툰 창작 및"으로, "만화 창작을"을 "만화·웹툰 창작을"로 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만화 및"을 "만화·웹툰 및"으로, "만화를"을 "만화·웹툰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만화 중"을 "만화·웹툰 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"을 "정보통신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"만화 및 만화상품"을 "만화·웹툰 및 만화·웹툰상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만화를"을 "만화·웹툰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1의2. "웹툰"이란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"정보통신망"을 말한다)을 통해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만화의 형식으로 제작·가공된 콘텐츠(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

른 "콘텐츠"를 말한다)를 말한다.

8. "만화가"란 만화・웹툰 창작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.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중 "만화 창작"을 "만화・웹툰 창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"만화"를 각각 "만화・웹툰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중 "만화 및"을 "만화・웹툰 및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디지털 만화"를 "디지털만화・웹툰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"만화 및"을 "만화・웹툰 및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"만화 및"을 "만화・웹툰 및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"만화"를 "만화・웹툰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"만화"를 "만화・웹툰"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"만화 창작"을 각각 "만화・웹툰 창작"으로 한다.

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"만화 창작"을 각각 "만화·웹툰 창작"으로 한다. 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만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"만화 창작"을 "만화·웹툰 창작"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"만화 창작"을 "만화·웹툰 창작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만화 및"을 "만화·웹툰 및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만화 창작"을 "만화·웹툰 창작"으로 한다.

제6조 중 "디지털만화"를 "디지털만화 · 웹툰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만화 또는 만화상품"을 "만화·웹툰 또는 만화·웹툰 상품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"만화 및 만화상품"을 각각 "만화·웹툰 및 만화·웹툰상품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만화의"를 "만화·웹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"만화"를 각각 "만화·웹툰"으로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만화 및"을 "만화·웹툰 및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"만화"를 각각 "만화·웹툰"으로 한다.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만화 및 만화상품"을 각각 "만화·웹툰 및 만화·웹툰상품"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만화의 창작"을 "만화·웹툰의 창작"으로, "만화의 예술적·기술적"을 "만화·웹툰의 예술적·기술적"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(협회의 설립) ① 만화가 또는 만화사업자는 만화 산업의 발전과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만화가단체 또는 만화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만화가단체 및 만화사업자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만화·웹툰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

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출판 및 만화를"을 "출판, 만화 및 웹툰을"로 한다.

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바목 중 "만화"를 "만화 · 웹툰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	만화·웹툰 진흥에 관한 법률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만화 창작 및</u>	제1조(목적) <u>만화·웹툰 창</u>
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	<u>작 및</u>
사항을 정하여 <u>만화 창작을</u> 활	<u></u> 만화·웹툰 창작
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	으
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	
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	
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"웹툰"이란 정보통신망
	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	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"정
	보통신망"을 말한다)을 통해
	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
	에서 만화의 형식으로 제작・
	가공된 콘텐츠(「콘텐츠산업
	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
	따른 "콘텐츠"를 말한다)를 말
	<u>한다.</u>
2. "한국만화"란 대한민국 국민	2
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	

업소를 둔 만화사업자(법인을 포함한다)가 제작한 <u>만화 및</u>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 정받은 만화를 말한다.

- 3. "공동제작만화"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 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 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만 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 정되는 만화를 말한다.
- 4. (생략)
- 5. "디지털만화"란 만화를 디지 털파일 형태로 가공·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.
- 6. "만화산업"이란 <u>만화 및 만화</u> 상품(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

	<u> </u>		
3.			
			 만
	<u>화·웹툰 중</u>		
 4. 5. 	(현행과 같음)	· 	
·			
	<u>정보통신망</u>		
6.	만화		•
	 만화 • 웹툰상품		

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· 무형의 재화·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의 창작·제작·배급·대여· 판매·활용·수출·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7. "만화사업자"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
<신 설>

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 자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 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·지원하는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(생략)

7
<u>만화·웹툰을</u>
8. "만화가"란 만화·웹툰 창작
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
<u>말한다.</u>
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
세3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
<u>만화·웹툰 창작</u>
②
1. (현행과 같음)

2.	<u>만화</u>	관련	법령	및	제도의	개
,	선					

- 3. <u>만화</u>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 한 방안
- 4. <u>만화</u>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 안
- 5. <u>만화 및</u>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
- 6. (생략)
- 7. 만화산업 및 <u>디지털만화</u> 관 련 기술·표준의 개발과 보급
- 8. (생략)
- 9. <u>만화 및</u>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
- 10. <u>만화</u>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
- 11. 그 밖의 <u>만화 창작</u> 및 만화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<u>만화 창작</u> 및 만화 산업을 육성·지원하는 시행계 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 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 다.

2. 만화·웹툰
3. <u>만화·웹툰</u>
4. <u>만화·웹툰</u>
5. <u>만화·웹툰 및</u>
6. (현행과 같음)
7 <u>디지털만화·웹</u>
트 <u>ፒ</u>
8. (현행과 같음)
9. <u>만화·웹툰 및</u>
10. <u>만화·웹툰</u>
 11 <u>만화·웹툰 창작</u>
<u>만화·웹툰 창작</u>
3
3
3
3

④ (생략)

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3조의2(만화진흥위원회) ①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 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 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위촉한다.

④·⑤ (생략) <신 설>

(4) (연 앵 파 (4)
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
제3조의2(만화진흥위원회) ①
<u>만화·웹툰 창작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만화・웹툰
<u> 창작</u>

(4)·(5)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3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정 책의 수립 · 시행을 위하여 만화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 사의 대상 ·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.

제2장 <u>만화 창작</u> 및 만화산업의 진흥

제4조(<u>만화 창작</u>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<u>만화 및</u> 만화산업을 보호하 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<u>만화</u> <u>창작</u>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, 만화사업자,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6조(기술개발의 촉진)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<u>디지털만화</u> 및 만 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 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 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협동 개발 및 연구)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<u>만화 또는 만</u> 화상품의 개발·연구를 위하여 인력·시설·기자재·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

만화산업의 진흥
제4조(<u>만화·웹툰 창작</u> 및 만화산
업의 활성화) ①
<u>만화·웹툰 및</u>
② 만화・
<u> 웹툰 창작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기술개발의 촉진)
<u>디지털만화·웹툰</u>
·
제7조(협동 개발 및 연구) ①
제7조(협동 개발 및 연구) ① <u>만화·웹툰 또</u>
제7조(협동 개발 및 연구) ①
제7조(협동 개발 및 연구) ① <u>만화·웹툰 또</u> 는 만화·웹툰상품

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 제8조(유통활성화 등)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 흥을 위하여 <u>만화 및 만화상품</u> 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<u>만화</u>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·유통 방지,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 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적재산권의 보호) 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<u>만화</u>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(생략)
 - 2. <u>만화</u>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교육·홍보
 - 3.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유통활성화 등) ①
<u>만화·웹툰 및 만화</u>
· 웹툰상품
② <u>만화·</u>
<u>웹툰 및 만화·웹툰상품</u>
 제10조(지적재산권의 보호) ①
시 10 도(시 수 세 년 년 어 도오) (D
만화·웹툰의
② <u>만화·웹툰</u>
·.
1. (현행과 같음)
2. <u>만화·웹툰</u>
3. (현행과 같음)

(3)	(생	략)
(0)	\ ()	1 /

- 제11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 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
 - 5.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
 - 6. (생략)
 - ② (생략)
- 제12조(이용자의 권익보호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1. 우수한 <u>만화 및 만화상품</u>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·홍 보
 - 2. <u>만화 및 만화상품</u>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
 - 3. 그 밖에 <u>만화 및 만화상품</u> 이 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
지원) ①
<u>만화·웹툰 및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만화·웹툰</u>
5. <u>만화·웹툰</u>
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이용자의 권익보호) ①
1 <u></u> 만화·웹툰 및 만화·
웹툰상품
2. 만화・웹툰 및 만화・웹툰상
<u>五</u>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
3 <u></u> 만화·웹툰 및 만화·
웹툰상품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저인정) ① 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·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·기술 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인정받을 수 있다 ② (생략)

제13조(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
인정) ①
만화·웹툰의 창작
<u>만화·웹툰의 예술적</u>
<u>•기술적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(협회의 설립) ① 만화가
또는 만화사업자는 만화 산업의
발전과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
하여 만화가단체 또는 만화사업
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만화가단체 및
만화사업자단체(이하 "협회"라
한다)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
만화·웹툰의 제작 및 유통질서

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

노력하여야 한다.